

보험약관 설명의 대상에 대한 실증적 접근 및 법적 제안

김 은 경*

<차례> _____

- | | |
|---------------------|--------|
| I. 머리말 | IV. 평석 |
| II. 사건개요, 주장사항 및 쟁점 | V. 맺음말 |
| III. 비교법적 고찰 | |
-

주제어: 보험약관, 보험계약, 소비자계약, 정보비대칭, 보험자의 설명의무

<국문초록> 보험계약은 약관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계약이다. 보험약관은 보험자에게는 상품의 구성내용으로서 시장에서 보험자의 수준을 판단받는 법적 상품이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를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라 하고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에 해당한다. 이 의무를 보험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개의 보험 상품마다 그 특징이 다르고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 약관을 제공하는 보험자로부터 최소한의 필요정보를 얻게 하여 계약적 균형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보험약관의 생성과정에서 기원하는 정보비대칭상태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지 아니하고 계약적 약자에 대한 배려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 대법원이 지금까지 견지해오던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험계약자는 이러한 약관의 내용을 보험자의 설명이 없이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약관의 내용 중 보험자를 면책하게 하거나 또는 새롭게 책임을 부과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보험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논문접수일(2016.06.10), 심사개시일(2016.06.12), 게재확정일(2016.06.28)

약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유이거나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하는 내용의 약관에 대하여는 이는 현재까지의 대법원의 판단기준과는 달리 보험자가 설명을 해야 할 것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본다.

I. 들어가는 말

특수한 보험을 제외하고 보험계약의 체결은 강제되는 것이 아니어서 계약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다. 그런데 보험계약의 고유한 특성 중 하나가 다른 일반계약과는 달리 사행계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행계약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또 다른 측면에서 계약상 선의성이 고도로 요구된다. 고도의 선의성은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 계약체결 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일정한 의무를 도출해낸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룰 약관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측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상법은 제638조의 3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여 보험약관의 교부 및 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설명의무라고 하며 법정주의인 동시에 계약의 교섭과정 중에서 하게 되는 일반의무이다. 설명의무의 이행시기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의 유인을 지나 청약단계부터 승낙 전 까지 이며, 상법은 이 시기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라고 한다. 한편 동일한 시점에 보험계약자에게는 고지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약관에 기초하여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실제로 계약의 내용을 이룰 약관을 설명할 의무가 보험자에 의하여 선제적으로 이행되고,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가 이를 이어 후행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에 기반하여 보험의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

그런데 보험자가 이행하게 되는 설명의무의 이행범위에 대하여 상법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중요한 내용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지가 궁극적으로 설명의무의 이행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문제는 설명의무의 이행의 범위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된 학문적 논거나

판례가 보험계약자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판례는 일관되게 “법령에 규정된 내용”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또한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설명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¹⁾ 최근 문제가 되었던 재해사망특약에 있어서 자살면책과 면책제한조항에 대한 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재해사망특약 약관상의 자살면책조항 및 자살면책제한조항에도 불구하고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다는 설명을 하였거나 이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만한 사정이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²⁾ 이 부분과 관련하여 특약의 명칭에 ‘재해’라는 표현이 명기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그러한 자살이 보장개시 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해사망특약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이는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다하여야 할 약관설명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³⁾ 이는 그간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반적인 견해이다. 과연 실제 거래계에서도 보험계약자 등이 설명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되는 이 내용을 평균적인 소비자로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매우 원초적인 의문이 생겼다. 더불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보험자의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서 과연 보험계약자 등은 인식하고 있는지 또는 인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도 던져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그간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의심없이 수인했던 보험자의 설명의무 면제대상의 적정성을 확인해보기 위하여 보험약관 설명의무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 외에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확인해보고자 한다.

1)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38720 판결; 대법원 2007.04.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대법원 2013.06.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등.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 선고 2015나17806 판결.

3) 권영준, “자살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 『재산법연구』, 2015, 207면; 박세민,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문제-재해사망특약의 면책제한사유 해석”, 『고려법학』, 2016, 263면 이하.

II. 보험자의 약관설명 의무에 대한 일반적 접근

1. 보험자의 약관설명 의무에 관한 의의 및 법적 근거

보험자는 다양한 다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개별 보험계약자와 계약의 내용을 합의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 개별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합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⁴⁾ 따라서 대량성·반복성을 가지는 보험계약은 계약의 진행을 간소화하여 거래 계약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하여 작성된 약관을 통해 이루어진다.⁵⁾ 그런데 보통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험계약자들은 계약의 내용이 될 보험약관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예상하지 못할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부합계약의 특성상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가운데 내용결정의 자유가 사실상 박탈되고 있다.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훼손될 여지를 가능하면 저지하고,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그 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⁶⁾

보험자의 약관 설명의무는 계약의 성립 전 의무이지만,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여 계약 교섭의 당사자에게만 인정되는 의무이므로 계약체결상의 의무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보험자의 약관설명 의무의 위반은 불특정 다수와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불법행위 이론보다는 계약체결을 전제로 하는 채무불이행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⁷⁾ 설명의무는 보통 표준약관의 내용을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결합되어 다루어지며⁸⁾, 판례는 일관되

4) 대수의 법칙에 따라 보험자는 동일한 내용으로 개별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간에 보통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개별적인 약정을 하였다면 이러한 개별 약정은 약관규제법 제4조에 따라 보통보험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위 내용은 개별 약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보험계약자마다 개별의 약정을 하게 된다면 대량성·반복성을 이유로 만들어진 약관의 필요성이 희석된다는 의미이다.

5)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55면.

6)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7) 김은경·임채욱,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이행의 주체와 위반의 증명책임”, 「법제연구」 제46호, 한국법제연구원, 2014, 300면; 어수용,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설명의무와 선택권의 보호”, 「재산법연구」, 제27권 3호, 2011. 2, 111면.

8) 김은경·임채욱, 앞의 논문, 296면; 박은경, “표준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약관설명 의무 면제대상인

게 법령에 규정된 내용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서도,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라면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아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다.⁹⁾ 설명의무의 법적 성질과 이행책임 주체라는 본질적인 부분은 소외된 채 개별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바, 법적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¹⁰⁾

상법은 제638조의3 제1항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설명의무에 대한 규정은 1991년 개정 상법에서 신설되었는데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¹¹⁾ 상법 제638조의3을 신설할 당시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라고 규정하였으나, 2014년 개정 상법에서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로 개정하였다. 그 내용도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에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로 개정된 바 있다. 명시의무는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의무를 말한다. 명시의무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약관의 내용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교부와 설명은 명시의 한 방법이라 한다. 설명의무는 고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교부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는 명시의무라기 보다 설명의무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고 보험계약자 보호라는 입법취지에도 맞는다고 한다.¹²⁾¹³⁾

가”, 「법학연구」 제52권, 한국법학회, 2013.12, 참조; 장덕조, “약관설명 의무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상사판례연구」 제26권 1호, 2013.03, 참조.

9)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38720 판결; 대법원 2007.04.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대법원 2013.06.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등.

10) 같은 취지의 견해로는 위계찬, “계약체결과정에서 설명의무의 근거”, 「원광법학」, 제23권 제2호, 2007, 187면.

11) 대법원 1998. 0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12) 송호신,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법학연구」 제37집, 한국법학회, 2010, 322-323면.

13) 최근의 국제적인 동향은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더 확대되어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해 볼 여지는 있다. 김은경, “독일 보험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86년 12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을 제정하였다. 약관규제법 제3조에서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설명의무에 대하여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에는 후단의 설명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¹⁴⁾

보험업법은 2010. 7. 23. 개정으로 제95조의2를 신설하여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에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 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95조의2 규정은 설명의무에 대해 자기책임의 원칙의 전제로서 발전된 금융기관의 고객보호의무로 보아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와는 다르다는 견해가 있다.¹⁵⁾ 그러나 상법과 보험업법에서 규정된 양 의무는 모두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중요한 내용 내지 중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양 규정이 명백히 다르다고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가 있다.¹⁶⁾ 보험업법 제95조의2는 상법 제638조의3에서 규정하는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내용과 방법을 이행자인 보험자의 입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¹⁷⁾

2. 보험자의 약관설명 의무의 상대방 및 이행방법

설명 의무의 상대방은 반드시 보험계약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보험약관을 설명

약법상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고찰, 『기업법연구』, 제23권 제2호, 2009.6, 169면 이하.

14) 송호신, 앞의 논문, 329면; 김헌무,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범위”, 『경영법률』 제19집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441면.

15) 장덕조, 『제2판 보험법』, 법문사, 2015, 165-167면.

16) 김현록,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와 그 새로운 입법안”, 『상사판례연구』 제26집 제1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13, 80면.

17) 김은경 · 임채욱, 앞의 논문, 291면.

하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¹⁸⁾ 설명의무의 이행 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보험료율의 체계 등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¹⁹⁾ 설명의무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설명하여야 보험계약자는 그 약관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⁰⁾ 설명의무의 이행은 구두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약관이 기재된 광고지나 안내문을 송부하거나 영업소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것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체결 이후에 약관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²¹⁾ 교부·설명 의무는 반드시 교부가 먼저 이행되고 그 후에 설명의무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²²⁾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정하여 보험자가 그러한 양태의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행위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계약의 내용을 이를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충실하여 방법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 측의 계약선택권의 보장을 위해 설명의무의 이행은 목적 지향적이어야 하며 이행 수단의 양태나 그 수단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3. 보험자의 약관설명 의무의 범위

보험자의 교부의무의 경우 보험약관에 보험계약의 내용을 모두 포함시켜야 하겠으나, 설명의무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보험약관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오히려 모든 내용을 설명하려다 보면 착오와 같은 의사표시의 불일치로 정작 중요한 내용을 누락시킬 수 있다.²³⁾ 또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때 less is more 원칙에 따라 계약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18)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19)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4다52492 판결.

20) 박은경, “표준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약관설명 의무 면제대상인가?”, 「법학연구」 제52집, 2013, 335면.

21) 송호신, 앞의 논문, 329면.

22) 박세민, 「제3판 보험법」, 박영사, 2015, 146면;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193-194면.

23) 송호신, 앞의 논문, 329면.

되는 정보만 제공해야한다는 견해가 있다.²⁴⁾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보험자는 보험약관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일부를 설명하면 된다고 본다. 보험약관에서 중요한 내용이란 객관적으로 보험계약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될 만한 사실을 말한다.²⁵⁾ 따라서 중요한 내용은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²⁶⁾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규정도 설명의무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인다면 계약체결 여부나 계약내용 결정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어야 한다.²⁷⁾ 더욱이 보험자가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는 보험계약자 측에 의무부과가 될 만한 내용과 보험자를 면책하게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 가운데 중요한 내용의 구체적인 것으로는 보험사고의 내용,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액, 보험기간,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보험목적물 양도할 때에 특수한 효과,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당해 보험약관 조항의 법적 의미와 효과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견해²⁸⁾와 설명정도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이어야 하나, 그 조항의 법적 의미와 효과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²⁹⁾가 있다.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다.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판례와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판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

대법원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시한 사항은 다음과

-
- 24) 이현령, “개정 표준약관 개관”, 『보험법 연구』 제4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2010, 161면.
 25)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판결.
 26) 박은경, 앞의 논문, 335면.
 27) 전우현,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검토”, 『상사판례연구』 제18집 4권, 2005. 12, 187면.
 28) 박수영, “상법 제638조의 3과 약관규제법 제3조와의 관계”, 『보험학회지』 제59집, 한국보험학회, 2001, 140면.
 29) 이진수, “보통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대상과 그 예외에 관한 고찰”, 『법과기업연구』 제4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35면.

같다. 보험상품의 내용과 보험요율의 체계 및 보험계약의 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³⁰⁾ 26세 이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³¹⁾ 21세 이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³²⁾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승계절차 요건,³³⁾ 재해보험상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험가입이 배제된다는 내용,³⁴⁾ 상해보험의 면책사유,³⁵⁾ 업무용자동차보험에서 유상운송 면책조항,³⁶⁾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보상범위,³⁷⁾ 피보험자의 폭행 또는 구타에 의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³⁸⁾ 등이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은 보험약관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변액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에 규정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³⁹⁾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이 사안이 고객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큰 변액보험계약이라서가 아니라, 그 보험계약이 간접투자의 성격이거나 장기투자목적의 자유적립성 보험상품의 여부를 불문하고 설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한다.⁴⁰⁾

(2)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다. 약관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도 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30) 대법원 2007.1.12. 선고 2006다43330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판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14924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31)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판결.

32)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611 판결.

33)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970 판결.

34)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35)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36) 대법원 1999. 5. 11. 선고 91다 36642 판결.

37)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38)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60024판결.

39)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김선정, “약관에 없는 사항도 중요사항으로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월간생명보험』 9월호, 생명보험협회, 2014. 12, 62-63면.

40) 김선정, 앞의 논문, 66면.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②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③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⁴¹⁾

1)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대리인이 주운전자의 개념과 주운전자의 나이나 보험경력 등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진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나,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주운전자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배척하고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한 보험자의 보험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바 있다.⁴²⁾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하게 된다.⁴³⁾

보험계약의 부활은 해지 또는 실효 전의 보험계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계약을 말한다.⁴⁴⁾ 보험계약 해지 또는 실효 전의 계약체결에서 보험자가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보험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활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⁴⁵⁾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자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에 관한 약관의 조항이 상법 제656조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 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시하였다.⁴⁶⁾ 최초 보험약관의 내용과 동일한 갱신계약에서는 최초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대법원

41)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2776 판결.

42) 대법원 2001.7.27. 선고 99다55533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43)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123737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44) 김은경, 앞의 책, 287면; 박세민, 앞의 책, 338면; 이기수·최병규·김인현, 「제9판 보험·해상법」, 박영사, 2015, 165면; 정찬형, 「제17판 상법강의 하」, 박영사, 2015, 614면.

45) 김현무, 앞의 논문, 430면.

46)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판결.

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⁴⁷⁾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수년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된 약관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⁴⁸⁾ 설명의무의 면제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 사안의 경우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에 관한 사항을 보험자가 최초 계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대법원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한다.⁴⁹⁾ 이러한 기준은 보험계약자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은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다. 보험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뿐만 아니라 보험거래의 실상도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전제로 한다.⁵⁰⁾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에서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면책사유로 한 조항,⁵¹⁾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요금이나 대기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 조항,⁵²⁾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중기를 교통승용구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⁵³⁾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계약에서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⁵⁴⁾ 등이 이에 해당한다.

47)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48)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 16933 판결.

49)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6642 판결;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4070 판결.

50) 김현무, 앞의 논문, 432면

51)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4070 판결.

52)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6642 판결.

53) 대법원 2002. 8. 25, 선고 2001다72746 판결.

54)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 후 이혼한 부부에 대하여 종피보험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도덕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명의무의 대상에 대한 판단은 그 약관조항의 중요성, 보험계약에 미칠 영향, 보험계약자의 예견가능성

그런데 판례에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약관의 내용이라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거래상 일반적인 것인지에 대하여는 회의적이다. 보험거래의 실상을 잘 알지 못하는 보험계약자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라고 모든 사항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거나 또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험자의 주장은 보험계약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것이 된다. 보험계약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보험자의 주장으로 보험자는 기존에 존재하는 계약상의 의무가 면제되는 반면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설명이 없이도 알아야한다는 일률적이거나 확실적인 거래상의 기대로 인해 구체적인 경우에 손해가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사항은 보험자에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면책의 조건이 되지만, 반대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내용에 대한 부지(不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이중적인 불균형성이 있다.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자는 면책이나 보험계약자는 그 부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보험자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라는 근거하에 설명의무를 면제받으려고 할 터인데, 약관을 기반으로 한 보험계약에서 계약내용을 형성하는 주도권을 보험자가 가진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불균형성 내지 비형평성의 문제를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수인해야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된 약관이 거래상 공통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보험약관에 반복적으로만 등장했을 뿐이지 그 자체에 법률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의무나 부담부만이 되는 사안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를 보험자의 설명없이도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계약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약관의 내용이라는 것이 보험약관에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는 단순한 되는 것이라는 근거에 따라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명확한 기준 없이 모든 사안에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보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일반의 보험계약자에게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문제된 약관이 더 이상 보편적인 조항이 아닐 수도 있다.⁵⁵⁾ 또한 문제된 약관이 다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덕적 위험의 가능성만으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는 비판이 있다(박은경, 앞의 논문, 337면).

55) 이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의 결과에 대하여는 이하 III. 보험자의 설명의무 대상과 면제대상 판단에

수의 약관에 공통적으로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적 사전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이에 대한 명확한 분별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의 경제적 비대칭의 구조적인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에게 설명의무의 면제가 보험계약자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모순을 해소함 없이 보험계약체결의 신속성이나 효율성만을 전면에 내세울 수는 없다고 본다.

3) 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관계 법령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설명의무의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사항이 타당한지 역시 의문이 있다. 주로 판례가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제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자동차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등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또는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무 규정,⁵⁶⁾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피보험 건물의 구조의 변경·개축 등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무 규정,⁵⁷⁾ 피보험자의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⁵⁸⁾ 등이 있다.

설명 의무의 근거는 보통보험약관을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험 계약자들은 계약의 내용이 될 보험약관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예상하지 못할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험자의 약관설명 의무를 지나치게 경감시켜주는 해석이 될 수 있다.⁵⁹⁾ 보험계약자가 법령의 규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대한 실증적 접근에서 다루도록 한다.

56)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이 판례는 법령상의 규정을 설명의무의 예외로 인정한 최초의 판례이다.

57)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58)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60024 판결.

59) 이정원, “보험자의 약관설명 의무 위반의 법적 의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제15집 3권,

면 보험자의 설명이 없어도 약관의 교부만으로 충분할 것이다.⁶⁰⁾ 일반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본다. 약관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보험자의 설명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이해가 동반해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Ⅲ. 보험자의 설명의무 대상과 면제대상 판단에 대한 실증적 접근

1. 보험자의 약관설명 의무 면제대상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이해도 조사

(1) 보험자의 약관설명 의무 면제대상의 분석대상사건

망인은 2004. 8. 16.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교보베스트플랜C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에도 함께 가입하였다. 2)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21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애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에 가산보험금을 더한 금액의 - 3 -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추가로 5,000만 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해분류표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부터 제32호까지 재해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23조 제1항과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은 각각 독립적으로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632면.

60) 김현무, 앞의 논문, 435면.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에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⁶¹⁾

(2) 설문조사와 분석대상의 제한

위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에 관한 사건을 분석대상에 한정해서 볼 때, 보험자의 약관 설명의무의 면제대상이 되는 내용은 기존의 판례⁶²⁾에 따르면 분석대상에서 밀출된 바와 같다. 즉 보험소비자가 자살에 의한 사망의 경우 보험자 면책인 지 여부, 자살면책제한의 기간, 재해사망의 의미,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제11조의 의미 등이다.

이 설문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대상자(1020명)를 보험업무종사자(222명)와 일반인(798명)으로 구분하였고, 일반인도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법학석사과정 이상에 재학 중인 자(68명)⁶³⁾와 그러하지 아니한 자(730명)로

61) 이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2016. 5. 12 선고 대법원 2015다243347 판결)은 다음과 같다. 자살재해특약은 해당 사건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기는 하나 보험업법상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에 속하는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생명보험의 일종인 이 사건 주계약과는 보험의 성격을 달리하고, 그에 따라 보험사고와 보험금 및 보험료를 달리하는 별개의 보험계약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 4-가 되었을 때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우발성이 결여되어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면책 및 면책제한 조항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처음부터 그 적용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특정 약관조항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약관해석에 의하여 이를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그 조항이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조항임이 명백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약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를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가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 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6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38720 판결; 대법원 2007.04.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대법원 2013.06.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등.

63) 일반인인 중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법학석사과정 이상에 재학 중인 자에 대한 분석은 문

구분하였다. 다만 여기에서의 분석결과는 단순히 보험업무종사자와 일반인에 한 정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특별히 이 사건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인식도를 조사한 계기는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가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재해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보험사가 재해특약의 약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생명보험 표준약관(2010.1.29일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분쟁의 대상이 되었는바, 이는 단순히 약관을 제정한 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인데 보험자가 개별 보험상품에 대한 약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의 실수로 면책제한조항을 해당사건 재해특약에도 그대로 둔 점을 이유로 하여 해당사건 재해특약의 보험사고의 범위를 재해가 아닌 자살에까지 확장하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당초 해당 사건 재해특약의 체결시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주게 되는 한편, 재해특약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해하고 보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무리한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평균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스스로 해당사건 재해특약의 본래 취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⁶⁴⁾ 판례의 입장에 대한 의문에서부터이다. 즉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재해특약의 내용은 보험자의 설명이 없어도 과연 보험계약자가 알 수 있었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인지를 계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한 것이다.

(3) 설문내용

보험약관 관련 통계조사

본 조사는 보험계약자에 지위에 있는 일반인들과 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보험전문인들 ‘자살면책제한 조항 및 재해사망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 이외에 다른 특별한 목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질문 사항들에 성실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된 사건인 재해사망특약과 자살면책제한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2016. 5. 12 선고 대법원 2015다243347 판결)이 난 2016년 5월 12일 이후에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보도나 학습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어느 정도 인지한 이후에 한 조사이다. 그 이외의 조사는 해당 판결 이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7. 선고 2015나14876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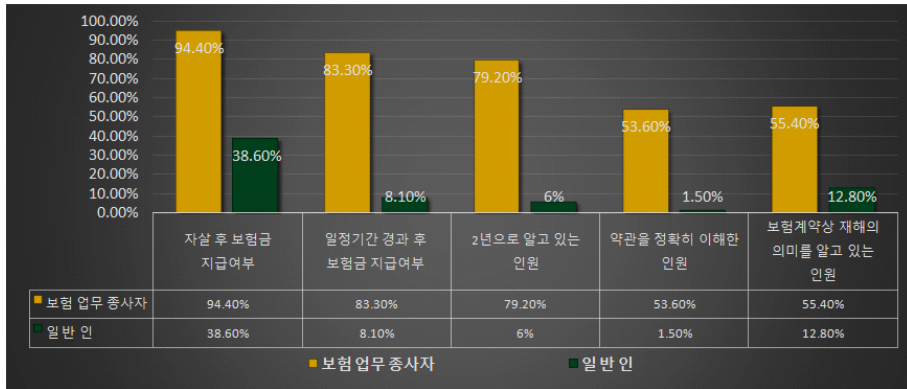
항 목	답 변		비 고
1. 나 이	() 세		
2. 학 령	① 중졸이하 ② 고졸이하 ③ 대졸이상		(해당되는 란에 체크(√) 해주시길 바랍니다.)
3. 귀하께서는 현재 보험업무 관련 종사자이십니까?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4. 자살을 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5. 자살의 경우 보험가입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6. (5번 질문에서 '그렇다'의 경우) 보험가입 이후에 몇 년이 지나야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⑤ 5년		
7. 아래는 보험약관의 일부 내용입니다. 해당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① 잘 이해된다. ③ 모르겠다.	② 조금 이해된다. ④ 전혀 모르겠다.	
제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p>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p>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에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p> <p>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p>			
8. 위의 해당 약관의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①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②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③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당되는 란에 체크(√) 해주시길 바랍니다.)
9. 재해사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10.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재해란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 재앙으로 인하여 받는 피해 ② 태풍·홍수·호우·폭풍·폭설·가뭄·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생기는 피해 ③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 등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초래된 사고		
11. 자살이 재해사망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12. 귀하께서는 아래 밑줄 친 부분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제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p>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p>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에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2. 보험소비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인식

보험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는 일반인과 보험업무 종사자인 동시에 보험계약자의 가능성이 있는 두 부류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도식화한 것은 다음의 표와 같다.

설문 목적	
- 평균적인 보험소비자의 자살면책제한 조항 및 재해사망에 대한 인식도 조사	
설문 기간 : 2016년 5월 2일 ~ 2016년 5월 22일	
설문 대상 (전체 1,020명)	
- 일반인 730명, 보험업무 관련 종사자 222명, 법학전문가 68명	
참고 퍼센티지(%) : 해당 그룹별 전체 인원 중 응답한 인원의 비율	

<보험약관 내용의 인식정도>



이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살이 보험금지급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보험업무종사자들의 대부분(94.40%)은 이를 알고 있었지만, 일반인은 오로지 38.60%만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자살이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근본적으로 안다고 답한 자들 중에서 일정기간 경과 후, 즉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에는 부활청약일)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후의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

업무종사의 83.30%, 일반인은 8.10%로 10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정기간 경과 후 자살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이 허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 중, 보험업무종사자 중의 79.20%가 그 일정기간이 2년이라고 대답하였으나 일반인은 6%라고 응답하여 실제로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의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안 경우를 아는 일반인은 많지 않았다.

최근 판례⁶⁵⁾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자살에 대한 면책제한조항의 취지를 담고 있는 해당 재해사망특약의 조항의 이해여부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잘 이해된다+조금 이해된다)고 본 보험업무종사자는 53.60%에 해당한 반면, 일반인 중 1.50%만이 이를 이해한다(역시 잘 이해된다+조금 이해된다)고 하여, 약관에서 나타내는 의미를 보통의 경우는 알아내기 어렵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의 보험가입자의 98.50%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약관의 기술이 이해하기 곤란한 문장구조로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보험업무종사자들도 그 내용을 절반 정도만 이해하는 것이므로, 결국 보험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는 자에게도 그 내용이 어렵게 인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일반인의 경우는 단지 1~2% 정도만 해당 약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아 약관의 이해도는 지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자살이 재해사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재해사망특약의 성질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고 기술한 보험약관은 그러므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재해의 의미에 대한 인식 및 재해사망의 취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보험업무종사자의 절반인 55.40%만이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일반인은 12.80%만이 아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소결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면 보험자는 면책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는 상법 제659조에 적시한 바이다. 그리고 보험사고는 우연하여야 한다는 대명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를 굳이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보험자가 약관을 중심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

65)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7. 선고 2015나14876 판결

살은 고의성이 있는 사망사고이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일련의 보험약관의 내용이 보험 계약자 등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보험약관의 이해도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그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가 본디 약관이 이해하기 어렵게 기술된 측면도 있지만, 보험계약의 기술성 측면이나 사행계약적인 특성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더욱이 쌍무적인 의무를 계약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과정에서 약관에 규범적인 요소가 포함되기도 한다.

과연 보험계약자 등이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아무 의심 없이 당연하다고 보아야 할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약관이해도 조사에서는 그야말로 극단적이고 회의적인 결과가 나왔다. 자살의 고의성으로 인하여 이것이 보험에서의 재해에는 절대 포함될 수 없다는 것도 일반인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은 아니었다. 결국 이는 재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같은 맥락인데 보험업무종사자에게조차 이를 인식하고 있는 자는 절반을 상회하는 정도의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보험약관 중 기존의 판례에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므로 보험자의 설명이 면제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⁶⁶⁾에 곤란한 결과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보험에서 재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에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 전제가 모두 충족하는 때에야 그 사고는 재해에 해당한다. 외래성은 보험사고가 신체의 외부로부터 생긴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보험약관상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⁶⁷⁾ 일반

66)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38720 판결; 대법원 2007.04.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대법원 2013.06.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등.

인뿐만 아니라 보험업무종사자가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불합리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보험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뿐만 아니라 보험거래의 실상 역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⁶⁸⁾ 보험자에 비하여 전문적이지 아니한 일반인에게는 보험약관의 이해가 대법원의 판례가 제시하는 것과 같이 거래상 일반적인 내용이고 공통된 것이거나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보험계약은 약관을 기반으로 하는 계약으로 부합계약이므로 약관의 이해가 기본적인 전제이다. 보험약관을 보험자의 주도로 구성하여 이를 적용받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계약적 구도 하에 있다. 물론 보험약관의 모든 행간을 일일이 다 설명하고 보험계약자의 이해정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가 견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획일적으로 면제하는 경향을 취한다면 약관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한 분쟁비용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IV. 맺는 말

보험계약은 약관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계약이다. 보험약관은 보험자에게는 상품의 구성내용으로서 시장에서 보험자의 수준을 판단받는 법적 상품이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를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라 하고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에 해당한다. 이 의무를 보험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개의 보험 상품마다 그 특징이 다르고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 약관을 제공하는 보험자로부터 최소한의 필요 정보를 얻게 하여 계약적 균형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한다.⁶⁹⁾

67) 이상은 김은경, “스포츠 상해와 보험자 면책”,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15, 179면 이하 참조

68) 김현무, 앞의 논문, 432면

보험자가 불완전하게 이행한 약관의 설명으로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에 대한 그릇된 결정을 하게 되고 이것의 부정적인 결과가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야 현실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동일한 문제가 역시 다른 분야에서도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 부족에서 비롯된 환자의 치료 선택권 보호 문제가 의료법 분야에서 화두가 된 경우가 그것이다.⁷⁰⁾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보험약관의 생성과정에서 기원하는 정보비대칭상태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지 아니하고 계약적 약자에 대한 배려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거둘 수가 없다. 이러한 의구심은 비록 모든 보험계약자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1천여 명이 넘는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특정약관의 일부분에 대한 약관이해도 조사에서 다시 확인이 되었다. 보험약관은 매우 어렵게 기술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사전적인 지식을 보험소비자 측에 요구하고 있다. 시중에 보험계약을 위하여 제시되는 약관이 통상적이고 평균적인 소비자⁷¹⁾가 이해하기에 보편적인 문장표현 수준이나 명확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아서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약관에 기초한 계약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쉽고 평이하게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큰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보험상품이 주계약에 다채로운 특약을 다수 붙여 만든 구성을 취하는 한, 그 약관을 간명하게 만드는 일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상품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생기는 불이익을 보험계약자가 수인하는 쪽보다는 보험상품의 공급자인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69) 김은경,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대한 재고”, 『상사판례연구』 제20권 3호, 2007.09, 116면.

70) 김계현·김한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천법학』 제6권 4호, 2013.12, 참조; 김나경, “의사의 설명의무의 법적 이해”,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5권 1호, 2007.06, 참조; 박영복, 전계논문 190-192면.

71) 유럽사법재판소(EuGH)의 판결에 따르면 보통거래약관에서 기준이 되는 소비자란 소비와 관련하여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서 이에 따라 신중하고 동시에 합리적인 자로 판단되는 자이다(Heinrichs, NJW 1996, 2190 (2197); Hermann, VersR 2003, 1333(1337)). 이러한 기본적인 기준 하에 보험소비자란 보험에 대한 결정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자로서 법적 문외한인 평균적인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판단은 보험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Beckmann/Matusche- Beckmann, Versicherungsrechts-Handbuch, C.H. Beck, 2009, § 10, Rn. 167). 그러므로 개별 보험계약자의 개인적인 이해력은 본질적으로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BGH 9.12.1987, VersR 1988, 282(283); BGH 14.6.2006, VersR 2006, 1246; Palandt/Grüneberg, BGB, 73 Aufl. C.H.Beck, 2013, § 305c Rn. 15).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약관에 기반한 계약에서의 정보비대칭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원리로서 적정한 것이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대법원이 지금까지 견지해오던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약관의 내용 중 보험자를 면책하게 하거나 또는 특약으로 새롭게 책임을 부과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보험계약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유이거나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하는 내용의 약관에 대하여는 이는 현재까지의 대법원의 판단기준과는 달리 보험자가 설명을 해야 할 것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본다. 보험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거나⁷²⁾ 다른 기대이익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하지 말아야 한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고, 여전히 보험약관은 보험자에 주도권이 있는 상태에서 어렵게 기술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72) 대법원 1998. 11. 23. 선고 98다32564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대법원 2003.05.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대법원 2004.04.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대법원 2004.11.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대법원 2011.03.24. 선고 2010다96454 판결 등.

참고문헌

-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 박세민, 「제3판 보험법」, 박영사, 2015.
- 이기수 · 최병규 · 김인현, 「제9판 보험 · 해상법」, 박영사, 2015.
- 장덕조, 「제2판 보험법」, 법문사, 2015.
- 정찬형, 「제17판 상법강의 하」, 박영사, 2015.
- 채이식,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3.
-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 권영준, “자살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 「재산법연구」, 2015.
- 김선정, “약관에 없는 사항도 중요사항으로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월간생명보험」 9월호, 생명보험협회, 2014.
- 김은경 · 임채욱,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이행의 주체와 위반의 증명책임”, 「법제연구」 제46호, 한국법제연구원, 2014.
- 김은경, “독일 보험계약법상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고찰”, 「기업법연구」, 제23권 제2호, 2009.6.
- 김헌무,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범위”, 「경영법률」 제19집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 김현록,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와 그 새로운 입법안”, 「상사판례연구」 제26집 제1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13.
- 박세민,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문제-재해사망특약의 면책제한사유 해석-”, 「고려법학」, 2016.
- 박수영, “상법 제638조의 3과 약관규제법 제3조와의 관계”, 「보험학회지」 제59집, 한국보험학박은경, “표준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약관설명 의무 면제대상인가?”, 「법학연구」 제52집, 2013.
- 송호신, “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법학연구」 제37집, 한국법학회, 2010.
- 어수용,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설명의무와 선택권의 보호”, 「재산법연구」, 제27권 3호, 2011. 2.

- 위계찬, “계약체결과정에서 설명의무의 근거”, 『원광법학』, 제23권 제2호, 2007.
- 이정원, “보험자의 약관설명 의무 위반의 법적 의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제15집 3권,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이진수, “보통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대상과 그 예외에 관한 고찰”, 『법과기업연구』 제4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이현령, “개정 표준약관 개관”, 『보험법 연구』, 제4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2010.
- 양승규, “보험자의 약관설명 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저스티스』 29권 2호, 1996.
- 양승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지 여부”, 『손해보험』 제288호, 1992.
- 전우현,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검토”, 『상사판례연구』 제18집 4권, 2005. 12.
- 회, 2001.
- 정호열, “약관명시 설명의무와 고지의무의 관계”, 『정동훈교수화갑기념논문집』, 법문사, 1999.
- Beckmann/Matusche-Beckmann, Versicherungsrechts-Handbuch, C.H. Beck, 2009.
- Heinrichs, NJW 1996, 2190.
- Hermann, VersR 2003, 1333.
- Palandt/Grüneberg, BGB, 73 Aufl. C.H.Beck, 2013.

<Abstract>

The Empirical Approach and Legal Proposals for Description Target of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Kim, Eun Kyung*

Most of the insurance contract is a consumer contract based on the terms and condition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and content of the goods, the insurer receives determines his level in the market through this. The insurer issued to the policyholder when the terms and conditions to enter into insurance contracts and has an obligation to tell your important conten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t is called "Duty to Deliver and Specify Standard Insurance Terms", and that the legal obligations stipulated Article 638-3 (1) in the Commercial Act. The reason for imposing the obligation to the insurer is becaus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in detail the different features that each individual insurance products, with respect to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This is the fundamental purpose to the minimum necessary to obtain information from the insurer's terms and conditions to provide insurance as the policyholder has signed a contract to maintain the equilibrium relationship.

However,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the scope of the insurer's explanation obligation nor to understand their relationship to the state of origin information asymmetries in the process of creating an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is considered to be made without consideration for the contractual weakness. In fact, policyholders are not aware of the cont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are not properly insured without explanation. As a result, indemnify the insurer of the conten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r a new one that corresponds to the reason for the imposition of liability, and the reasons for imposing the obligations to policyholders or policyholders of the current Korea Supreme Court with respect to the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aw School, Dr. jur, Prof.

terms of the contents of a disadvantage for Unlike the determination criterion, it is also reasonable that an insurer has to do an explanation.

Key Words : Insurance Terms, insurance contract, consumer contract, information asymmetries, insurer's explanation obligation.